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2020. 12. 15.



금융위원회

Contents

I. 추진 배경

II. 추진 방안

III. 세부 내용

IV.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대출계약 당사자간 권리·의무의 균형 도모

- ▶ 대출의 성립(계약), 이행(추심), 변경(채무조정), 소멸(시효완성) 등 대출계약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채무자, 채권금융기관, 추심업자간 권리·의무의 균형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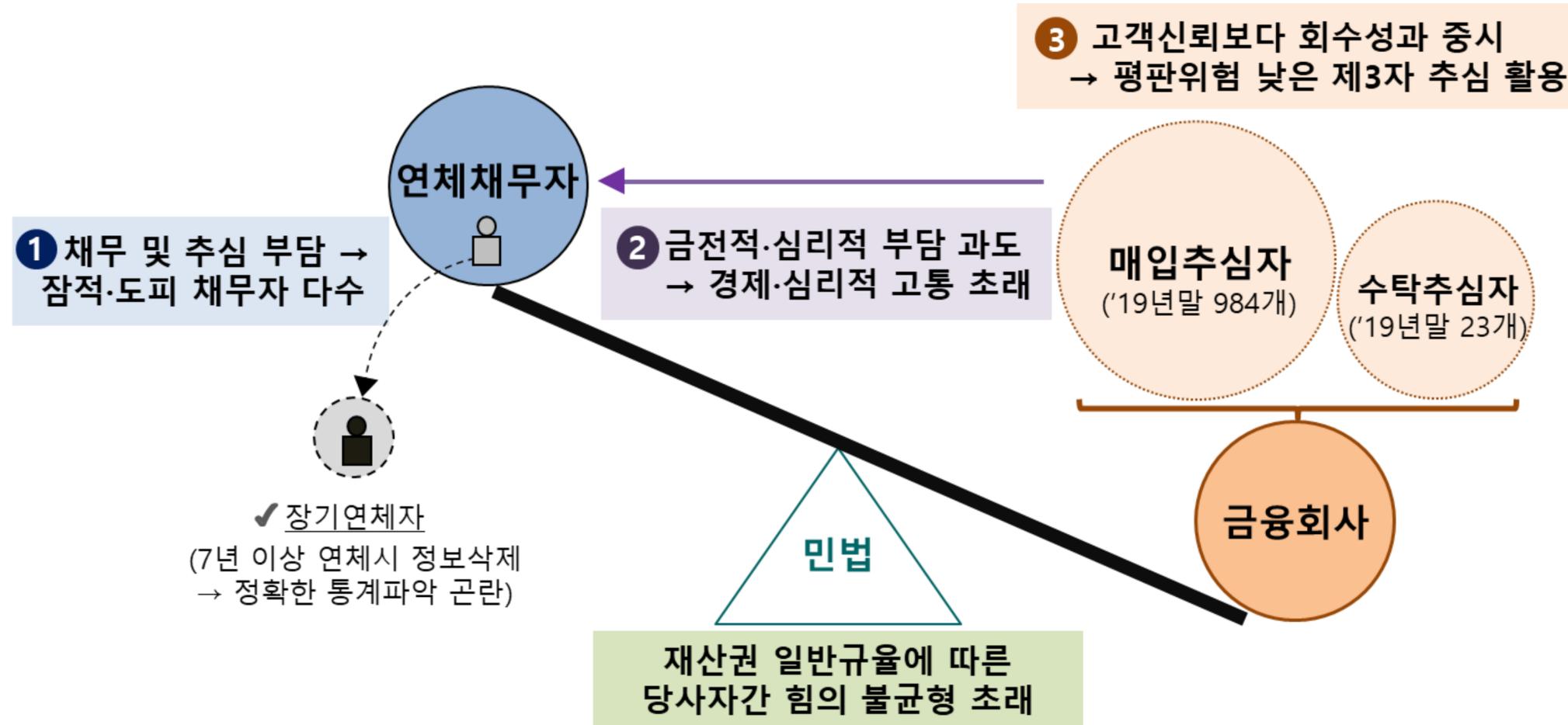
개인채무자 보호제도 개선경과 및 현황

- ☑ 2000년대 이후 수 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의 개인채무자 보호 제도의 틀 형성
 - 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02년), 법원 개인회생('04년) 등 채권자 집단적 채무조정 제도 구축
 - ② 「채권추심법」 제정('09년)을 통해 가혹한 불법 추심행위 제한
 - ③ 「대부업법」 제정('02년)을 통해 불법사금융 제한 및 매입추심업 규율·감독대상 포함('09년)
- ☑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개인연체채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연체·추심부담이 과도
 - ①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신청 전 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과 직접 채무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기회 부족
 - ② 폭행·협박 등 특정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채권추심법」은 채무자 재기지원과 권익증진에 한계
 - ③ 제3자 추심(추심위탁·채권매각)의 보편화는 회수치중 추심관행 형성 및 고객보호 소홀 초래

대출계약 당사자간 권리·의무의 균형 도모

- ▶ 대출의 성립(계약), 이행(추심), 변경(채무조정), 소멸(시효완성) 등 대출계약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채무자, 채권금융기관, 추심업자간 권리·의무의 균형 도모

민법상 재산권 일반규율 적용 현황



Q. 소비자신용 관련 해외 입법사례

[영미권] 개별 소비자신용법 제정

- ▶ **(미국)** 일반 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1968)과 채무조정업 규율법(Uniform Debt Management Service Act 2005)으로 2원화 * 채무자에 대한 정보공시, 공정한 채권추심, 채권매각 관련 내부통제 등으로 세분화
- ▶ **(영국)**: Consumer Credit Act 1974) 금전대부(Credit Agreement) 및 판매신용(Hire Agreement)과 관련한 대출계약 사항, 연체발생시 처리절차, 분쟁해결 절차 등 규율
* 관련업자(대출금융회사, 판매신용기관, 모집·중개, 채무조정 및 추심업자 등)에 대한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율 규정
- ▶ **(호주)**: National Consumer Credit Act 2009) 영국 소비자신용법을 모태로 하며 Hardship Variation*이라는 고유의 채무조정 절차 규정 * 경제적 곤궁에 처한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채권자는 채무조정에 응할 의무 → 협상결렬시 제3자 중재기구(ADR)이 중재
- ▶ **(뉴질랜드)**: Credit Contract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 호주법과 상당부분 유사하나 '08년 금융위기 이후 다른 영미권 국가에 비해 금융채무자 보호의 수준을 보다 높여* 채무자 보호 강화
*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과 금지, 기한이익 상실시 원금전체에 대한 가산이자 금지 등

[유럽] 일반법 내 소비자신용 특례 규정

- ▶ **(독일)**: 민법 소비자대차章, 1990) 소비자신용법 제정 후 2002년 민법에 통합 (영미권과 규율범위 유사)
- ▶ **(프랑스)**: 소비자법 소비자신용章, 1978) 과채무 해결방법 및 비영리상담기구 등 소비자신용 단체 이용방법 안내

[기타] 민법(채권편) 등 일반법 적용

▶ 한국

▶ 일본

Contents

I. 추진 배경

II. 추진 방안

III. 세부 내용

IV.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고객보호’와 ‘채권회수’ 가치의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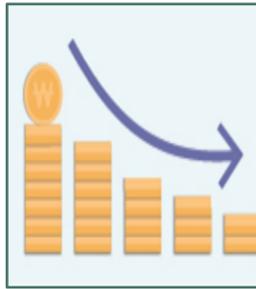
- ▶ 채권자와 추심자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및 **채무자의 방어권 확대**
- ▶ 특정 행위를 금지·의무화하기 보다는 **내부 관리절차와 유인구조 마련**에 집중

주요 내용



①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 채무조정교섭업 신설



② 연체·추심부담 완화

- 연체채무부담 한정
- 추심총량제한, 연락제한요청권
- 법정손해배상 도입



③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 위반시 원채권금융기관도 추심업자와 함께 법적책임 부담

법체계 개편

「대부업법」 + 「신용정보법」 + 신설 = 「소비자신용법」

「대부업법」

- 대부업(매입추심업 포함)
- 대부중개업
- 대부계약의 모집과 체결

「신용정보법」

- 수탁추심업
- 위임직채권추심인

규율 공백

규율 개선

- 금전대부업·매입추심업 분리
- 매입추심업자의 담보조달비율 제한

규율 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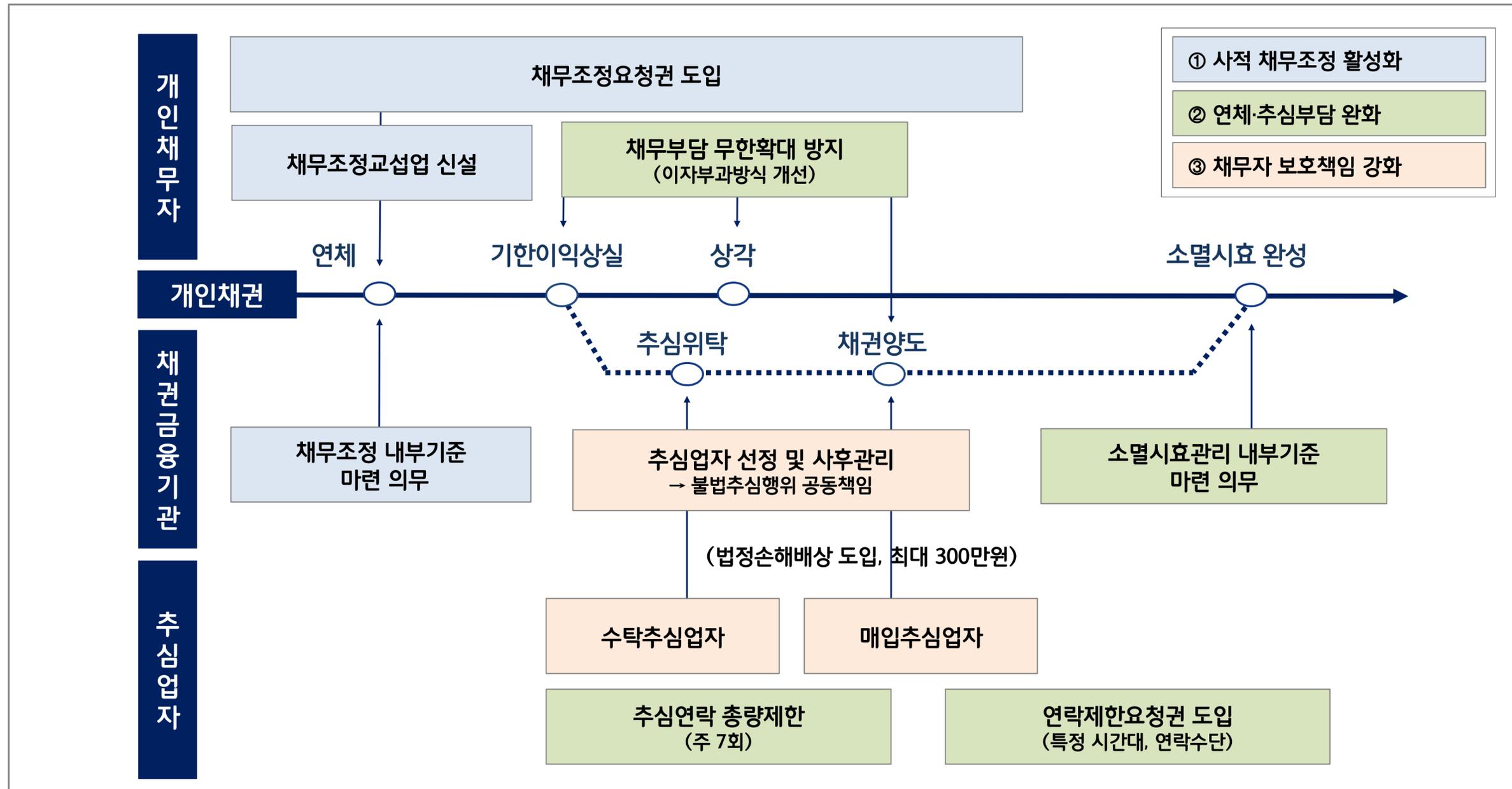
- 수탁추심업 허가 관련 규율 이관
- 매입·수탁추심업자의 추심행위에 동일한 규율 적용

규율 신설

- 채무조정요청권 및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 연체채무부담 및 추심총량 제한
- 연락제한요청권 및 법정손해배상 도입
- 원채권금융기관의 추심업자 관리의무

대출계약 이후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절차 규율

- ▶ 대출의 성립(계약), 이행(추심), 변경(채무조정), 소멸(시효완성) 등
대출계약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채무자, 채권금융기관, 추심업자간 권리·의무의 균형 도모



Contents

I. 추진 배경

II. 추진 방안

III. 세부 내용

IV.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1. 적용대상 채권과 행위 (1/3)

- ▶ 원칙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업무상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개인채권**'으로 포괄하여 적용
- ▶ 다만, 채권금액·담보유무에 따라 일부 규율을 차등 적용

개인채권에 대해 포괄 적용 (§2)

☑ “개인채권”이란 ①채권금융기관이 ②소비자신용을 원인으로 ③개인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의미

① 채권금융기관	② 소비자신용	③ 개인채무자
(1) 여신금융기관(금융업법), 대부업자(소비자신용법) (2) 보증기관(특별법) (3) 기타 채권자 (매입추심업자, 유동화전문회사 등)	(1)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대부 (카드·할부 포함) (2) 지급보증·보증보험의 대위변제 (3) 채권양수 등의 행위 - 채권금액이 대통령령(이하 '승')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는 제외	채무자가 '개인(자연인)'인 경우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ff9e6;"> * 보증인 및 채무인수인 포함, 가계대출 외에 개인사업자대출에도 적용 </div>

1. 적용대상 채권과 행위 (2/3)

- ▶ 원칙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업무상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개인채권'**으로 포괄하여 적용
- ▶ 다만, 채권금액·담보유무에 따라 일부 규율을 차등 적용

담보부 개인채권은 일부 규정 적용제외 등 (§3~§4)

☑ **담보권 행사가 가능한 개인채권은 과잉추심 가능성이 낮음 → 일부 규정 적용을 배제**

① **기한이익상실 및 채권양도 전 채무조정 특별절차 의무 (§29·§32)**

다만, '일정금액(→승) 이하 실거주 주택담보대출'에 한하여 경매 前 채무조정 특별절차 의무화(§37)

② **채권양도前 이자면제, 채권양도後 사후관리, 채권재양도前 원채권금융기관 동의 (§31·§33)**

담보권을 행사함에 따라 채권회수 가능 →과잉추심 가능성이 거의 없음

③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마련 및 적용 의무 (§51)**

담보권 행사에 따른 회수가능성이 있는 한 소멸시효 중단(=시효연장) 실익 존재

☑ **소비자신용 및 개인채권 관련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과 다른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

1. 적용대상 채권과 행위 (3/3)

- ▶ 원칙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업무상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개인채권**'으로 포괄하여 적용
- ▶ 다만, 채권금액·담보유무에 따라 일부 규율을 차등 적용

개인채권의 쟁과정 대상

성립	대부계약 체결과정에서 최고금리 제한, 상환능력 심사 등 고객보호 조치(\$22~\$28)
양도	기한이익상실 및 채권양도시 준수할 사항(\$29~\$34)
이행	채권자, 수탁추심업자, 위임직추심인 추심행위 및 추심위탁 절차 규율(\$35~\$43)
변경	채무조정절차(\$44~\$46) 및 채무조정교성업자 영업행위 규율(\$47~\$50)
소멸	소멸시효 관리방법 및 시효완성의 효과 규율(\$51)

2.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1/3)

▶ 대출계약 당사자(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신속한 재기 도모**

채무조정요청권 일반절차 (§44~§46)



**추심중지 및
채무조정안 마련**

-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 개인채무자는 채무조정 요청시 소득, 재산현황 등 상환의 곤란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함 (미제공시 접수거부 가능)
-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시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내 채무조정안 마련·제안**
 -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 상환능력과 채무특성(연체기간 등)에 따라 채무감면율과 상환일정을 정한 내부기준을 미리 마련
 - 다만, 채권금융기관 내부기준상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채무조정 거절 가능
-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 성립**

Q. 채무조정요청권 행사 제한 필요성 (§44)

Q. [행사대상] 해당 채권금융기관 단일채무자로 한정 필요 (다중채무자 제외)

A.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간 권리·의무관계는 여타 채권금융기관 존재 여부와 무관

- 채무조정요청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여러 채무조정 제도 중 개별 개인채무자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 판단을 보호대상인 개인채무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

Q. [행사횟수] 채무조정요청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사횟수 및 방법 제한 필요

A. 채무조정 요청 접수 거부사유를 통해 남용 방지 가능 (§44⑤)

- 채무상환의 어려움에 대한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자료가 미비한 경우
- 채무조정이 거절된 채무에 대하여 상환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채무조정 재신청
- 법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 진행중

*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2회 이상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심중단 적용 제외 (§45③)

2.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2/3)

▶ 대출계약 당사자(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신속한 재기 도모**

채무조정요청권 특별절차 (§29·§32·§37)

✓ 채권금융기관이 개인연체채권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및 양도절차 진행 경우

➔ 미리 채무자와 채무조정 협상 의무화

- ① 채무자에게 기한이익 상실 및 양도 예정일까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정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통지

* 채권금융기관의 통지가 예정일 10영업일 이전까지 미도달시 → 도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나야 절차진행 가능

- ②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 채무조정 요청시 채권금융기관은 심사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 절차진행 금지

* 채무자 미요청시 채권금융기관은 통지한대로 절차진행 가능

✓ 1가구 1주택(일정금액 이하 실거주→승) 등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 경매절차에 한해 채무조정 특별절차 적용

- ① 채권금융기관이 승으로 정하는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려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경매신청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통지
 - 경매는 연체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승, 채무자 희망시 단축 가능) 이상 경과해야 신청 가능
- ② 기타 채무조정 요청 절차와 효과는 상동

Q. 채무조정요청권 특별절차(§29·§37)

Q. [§29① 특별절차 적용대상] 당연기한이익상실 사유 해당채권은 제외 필요

A.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서 당연기한이익상실 사유*는 제외 예정

* (예) 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도달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Q. [§37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주택경매 예정 사전통지 적용범위

A. 일정금액 이하 개인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1가구 1주택 원칙

- 개인채무자의 주택보유수 조회,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금융업권 의견수렴을 거쳐 승으로 규정 예정

2.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3/3)

▶ 대출계약 당사자(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신속한 재기 도모**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9~§13, §47~§50)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협상지원**

☑ **개인채무자의 전문성 및 협상력 보완 위해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 [고유업무] 채무조정 요청서 작성·제출대행, 협의대행 등의 개인채무자 조력
- [부수업무] 신복위 채무조정 접수대행, 채무조정안 상환관리, 재무상담 등
- [겸영업무]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다른 소비자신용관련업과의 겸영 금지

☑ **법인에 대한 등록제로 도입**

- 자기자본(→令), 영업보증금, 전문성, 물적설비·사회적신용 등 규정
-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 (3년마다 등록갱신 필요)

☑ **채무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수수료, 업무행위 등을 엄격히 규율**

- 개인채무자로부터 교섭·성과수수료 외 대가수취 금지 (최대 100만원→令)
-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는 상환관리·고지업무 수탁시에만 수수료 수취 可
- 신의성실 및 계약전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과,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Q. 채무조정교섭업

Q. 개인채무자에 대한 연락차단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45)

A. '채무자대리인 선임'(채권추심법 §8의2)과 달리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교섭업자 계약'은 채권금융기관 또는 추심업자의 추심연락 금지사유가 아님 → 추심연락에 영향 없음

-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시 10영업일 이내 심사결과 통지 의무
→ 요청접수~결과통지(최대 10영업일) 기간 중 추심 중단 [채무조정교섭업자 유무와 무관]

* 다만, 동일한 채무에 대해 2회 이상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심이 중단되지 않음

Q. 기존 무상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조정 비용 부담 야기

A. 현재 위탁추심수수료로 지불되는 비용(상각채권 원금의 20% 이상)을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혜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채무자 부담 축소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예상

- 채무조정요청권 법제화에 따른 개인채무자 부담완화 대비 채무조정교섭업자 수수료는 소액

* (예) 채무조정교섭업자 수수료 법적상한 100만원 = 원금 500만원 개인채권 위탁추심수수료

3. 채무자의 연체·추심부담 경감 (1/6)

▶ 연체기간 중 채무금액 누적과 추심강도 강화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의 곤궁과 수모를 방지

기한이익상실 후 연체이자 부과방식 개선 (§30)



상환기일 미도래분
연체가산이자
부과 금지

☑ 현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원금전체를 즉시 상환토록 하고, 상환치 못할 경우 원금전체에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 부과 중

☑ 향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금지*(약정이자만 부과)

- 채권금융기관이 개인채무자와 이에 위반되는 약정 체결 시 약정이자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 단, 관리·회수비용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청구는 가능

[사례]

※ 대출원금 100 = 상환기일 도래원금 10 + 미도래원금 90 → 기한이익 상실

(현재) 총이자 = 100 X (약정이자 + 연체가산이자)

(개선) 총이자 = [1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 [90 X 약정이자]

Q. 연체이자 부과 관련 의미 명확화 (§30)

Q. [§30① ‘약정’의 범위] 여신거래기본약관 포함 여부

A. 포함됨

Q. [§30①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 명확한 정의 필요

A. ‘당초 약정에 따른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부분’을 의미 (법제처 심사를 거쳐 반영 예정)

Q. [§30② “약정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 지연이자는 지연손해금에 해당

A. ‘약정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약정’으로 수정 예정 (법제처 심사를 거쳐 반영 예정)

Q. 기한이익 상실시 연체이자율 부과사례 국제비교

주요 국가별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부도(default) 이자율 비교

	부도이자율	비고
미국	약정이자율 + 3~6%p (상한)	- 고금리 모기지대출의 경우, 부도이자율 수준은 약정금리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음. - Freddi Mac 공급 모기지의 경우 연체가산금리 상한을 5%, FHA 공급 모기지의 경우 상한은 4%로 명시함.
영국	약정이자율 + 0~2%p (상한) 기준금리(중앙은행) + 3~4%p (상한)	별칙성 부도이자율의 부과는 금지하고 있으나, 연체에 따른 채권자의 손실비용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약정이자율보다 1~2%p 높게 설정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음.
캐나다	약정이자율 + 0%p	
독일	기준금리(중앙은행) + 2.5%p (상한)	
프랑스	약정이자율 + 3.0%p (상한)	
일본	약정이자율 + 연체가산금리 = 15~20% (상한;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최고이자율 상한: 10만엔 미만의 경우 연 20%, 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의 경우 연 18%, 100만엔 이상인 경우 연 15%
한국	약정이자율 + 6~8%p 주) '18.4월 연체가산이자율 3%p 상한 시행	주요 은행(들)의 연체이자율 상한: 15%~18%

* 출처: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KDI, '17.8월)

3. 채무자의 연체·추심부담 경감 (2/6)

▶ 연체기간 중 채무금액 누적과 추심강도 강화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의 곤궁과 수모를 방지

개인채권 양도前 장래 이자채권 면제 (§31⑤)



개인채권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 면제

✓ 현재 채권금융기관은 회수불능 개인연체채권을 상각,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한 이후에도 계속 이자 부과 → 채무 무한증식

✓ 향후 상각 개인채권(대상채권 범위 → 승)에 대해서는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토록 개선

* 상각 이후 이자부과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경우 채권자 권리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채권자가 매각(양도)을 실시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사용

- 채권금융기관이 회수불능으로 판단하여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연체채무자에 대해 계속 이자를 부과하는 불합리 개선

- 연체채무자가 채권양도 이후 늘어난 이자까지 상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회수가치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Q. 개인채권의 양도 제한 (§31)

Q. [§31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 개인채권 양도 상대방 기준 구체화 필요

A.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채권매입추심업 영위가 가능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으로 구체화 가능 (법제처 심사를 거쳐 반영 예정)

Q. [§31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객관적 확정개념 필요

*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 중단사유 존재 여부 등에 대한 법적판단 전제

A. ‘제51조제3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통지한 채권’ 등으로 수정 검토

* 채권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 기준

Q. [§31⑤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채권”] 객관적 기준 명시 필요

A.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채권’ 등으로 수정 검토

3. 채무자의 연체·추심부담 경감 (3/6)

▶ 연체기간 중 채무금액 누적과 추심강도 강화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의 곤궁과 수모를 방지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마련 (§51)



소멸시효 완성시
개인채무자 통지

☑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의 회수가능성과 실익을 고려하여 소멸시효중단(=시효연장) 기준을 이사회 의결로 마련할 의무

- 채권금융기관이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 중단사유 해당여부를 평가한 이후에야 시효 중단행위(지급명령) 실행 可

☑ 개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소멸시효 완성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

- 해당 통지는 민법에 따른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로 간주*

* 추후 채권금융기관과 추심업자의 고의적 시효이익포기(시효부활) 유도행위 방지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서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Q. 소멸시효 완성의 통지 (§51)

Q. [§51③ “소멸시효 완성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통지기간 연장 필요

* 소멸시효 완성 채권 특성상 차주와 장기간 연락 두절, 주소지 불분명 등의 경우 빈번

A. ‘소멸시효 완성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등으로 완화 검토

3. 채무자의 연체·추심부담 경감 (4/6)

▶ 연체기간 중 채무금액 누적과 추심강도 강화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의 곤궁과 수모를 방지

추심 및 양도 금지 (§31·§35)



일정 조건에서
추심 및 양도 금지

- 개인채무자가 이 법에 따른 채무조정, 신복위 채무조정을 요청한 채권의 경우 심사결과 통지 전까지는 추심·양도 모두 금지
 - 신복위 채무조정은 확정 이후 그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도 추심 금지 (신복위가 채무조정 합의안에 대한 개인채무자 변제상황 관리 → 양도는 허용)
- 매입추심업자 등 채권양수인이 채권자변동정보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제공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추심 금지
- 기타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추심 또는 양도 금지
 - 소멸시효 완성채권, 채무자 사망채권, 채권 존부·금액을 소송·분쟁중인 채권 등은 추심 및 양도 금지
 - 개인채무자가 채무확인서(채권추심법 §5①)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추심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추심 금지

3. 채무자의 연체·추심부담 경감 (5/6)

▶ 연체기간 중 채무금액 누적과 추심강도 강화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의 곤궁과 수모를 방지

추심연락 총량제한 (§36②~⑥)



구체적 기준마련
실효성 확보



추심자의 지나치게 빈번한 연락은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방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emotional distress)를 유발하므로 빈도 제한

- 채권추심자가 개인채무자에게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1주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 금지

*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8조의2 등 준용) → 횡수에 포함되는 구체적 행위는 승으로 규정

- 동일한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채권금융기관, 수탁추심업자,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연락행위를 모두 합산

- 채권추심자가 추심연락을 통해 상환능력 등을 확인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7일간 재연락 금지

Q. 추심연락 횟수 산정기준 (§36)

Q. [§36② “1주일에 7회” 초과 금지] 추심연락 총량제한 과도

* 현재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으로 ‘1일 2회’ 초과 연락 금지 중

A. 1주일에 7회 초과 추심연락 금지는 미국(‘19.5월 1주일 7회 제한 개정안 발표), 태국(‘19.11월 1일 1회 제한 시행) 등 최근 해외 입법동향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

Q. [§36⑥ “연락횟수의 계산방법” 승 위임] 추심연락 횟수 산정기준 구체화 필요

A. 해외사례, 업권의견 등을 토대로 하위법규 마련시 상세기준 구체화 예정

- 법정통지 등 법에서 정하는 절차 이행, 채무자로부터의 연락 또는 채무자 동의·요청에 따른 재연락 등 추심연락 횟수 산정시 제외사유 명시 예정

Q. 추심연락 횟수 산정기준 (§36)

[미국 사례] 채권추심법 개정안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19.5월)

§ 1006.14 Harassing, oppressive, or abusive conduct.

(b) *Repeated or continuous telephone calls or telephone conversations.*

(1) *In general.* (i) *FDCPA prohibition.* In connection with the collection of a debt, a debt collector must not place telephone calls or engage any person in telephone conversation repeatedly or continuously with intent to annoy, abuse, or harass any person at the called number.

(ii) *Identification and prevention of Dodd-Frank Act unfair act or practice.* <생략>

(2) *Frequency limits.* Subject to paragraph (b)(3) of this section, a debt collector violates paragraphs (b)(1)(i) and (ii) of this section, as applicable, by placing a telephone call to a particular person in connection with the collection of a particular debt either:

(i) **More than seven times within seven consecutive days;** or

(ii) **Within a period of seven consecutive days after having had a telephone conversation with the person in connection with the collection of such debt.** The date of the telephone conversation is the first day of the seven-consecutive-day period.

(3) *Certain telephone calls excluded from the frequency limits.* Telephone calls placed to a person do not count toward, and are permitted in excess of, the frequency limits in paragraph (b)(2) of this section if they are:

(i) **Made to respond to a request for information from such person;**

(ii) **Made with such person's prior consent given directly to the debt collector;**

(iii) **Not connected to the dialed number;** or

(iv) **With the persons described in § 1006.6(d)(1)(ii) through (vi).** (변호사 등 대리인)

Q. 추심연락 횟수 산정기준 (§36)

[태국 사례] 채권추심 연락횟수 제한 ('19.11월)

태국 정부는 2019년 11월 21일부터 「2017년 채권추심관리위원회 고시, 제목: 채권 추심 연락 횟수」에 의거하여 1일 1회를 초과하는 채권추심 연락을 금지한다. 이번 고시는 「2015년 채권추심법」에 의거하여 아누퐁 파오찐다(Anupong Paochinda) 내무부 장관 겸 채권추심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2019년 8월 30일자 전자관보에 게재되었으며, 게재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시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권 추심 연락 횟수: 1일 1회
- 채권 추심 연락 시간: 월~금 08:00~20:00 / 토~일 08:00~18:00
- 채권추심 횟수에 포함되는 연락 방법
 -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고 채무자가 이를 확인한 경우
 - 전화를 걸어 명확하게 채무 상황을 요구한 경우
- 채권 추심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연락 방법
 -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냈으나 채무자가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전화를 걸었으나 채무자가 받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전화를 받았으나 채무 상황을 요구를 하기 전에 채무자가 전화를 끊은 경우
- 채권추심자의 예: 은행,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사채업자, 도박 빚 채권자 등

1일 1회를 초과하는 채권 추심 연락, 채무자를 무시하는 언사, 폭력을 사용한 협박, 폭로 등의 행위에는 최고 10만바트(한화 약 388만원)의 행정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3. 채무자의 연체·추심부담 경감 (6/6)

▶ 연체기간 중 채무금액 누적과 추심강도 강화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의 곤궁과 수모를 방지

연락제한요청권 도입 (§36⑤)



특정시간·방법·수단
추심연락 제한요청



개인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

- 채권추심자는 추심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승인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요청에 응할 의무

[사례]

- ▶ 개인채무자가 '금요일 14:00 ~ 18:00'에 연락제한을 요청한 경우
추심자는 월~목요일, 금요일 09:00 ~ 14:00에 연락할 수 있으므로 요청 수락
- ▶ 채무자가 직장방문 대신 직장근처 카페에서 면담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 수락

Q. 추심연락 횟수 산정기준 (§36)

[미국 사례] 채권추심법 개정안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19.5월)

§ 1006.6 Communications in connection with debt collection.

(b) **Communications with a consumer—in general.**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b)(4) of this section, a debt collector must not communicate or attempt to communicate with a consumer in connection with the collection of any debt as prohibited by paragraphs (b)(1) through (3) of this section.

(1) **Prohibitions regarding unusual or inconvenient times or places.** A debt collector must not communicate or attempt to communicate with a consumer in connection with the collection of any debt:

(i) **At any unusual time, or at a time that the debt collector knows or should know is inconvenient to the consumer.**

In the absence of the debt collector's knowledge of circumstances to the contrary, a time before 8:00 a.m. and after 9:00 p.m. local time at the consumer's location is inconvenient; or

(ii) **At any unusual place, or at a place that the debt collector knows or should know is inconvenient to the consumer.**

(2) **Prohibitions regarding consumer represented by an attorney.** < 생략 >

(3) **Prohibitions regarding consumer's place of employment.** A debt collector must not communicate or attempt to communicate with a consumer in connection with the collection of any debt at the consumer's place of employment, if the debt collector knows or has reason to know that the consumer's employer prohibits the consumer from receiving such communication.

(4) **Exceptions.** The prohibitions in paragraphs (b)(1) through (3) of this section do not apply when a debt collector communicates or attempts to communicate with a consumer in connection with the collection of any debt with:

(i) **The prior consent of the consumer**, given directly to the debt collector during a communication that does not violate paragraphs (b)(1) through (3) of this section; or

(ii) **The express permission of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4. 원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1/4)

▶ 연체채무자도 '고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3자를 통한 추심의 경우도 채무자 보호책임 지속 부담

추심업자 선정 (§32~§34, §39·§40)

- ☑ 채권금융기관은 수탁추심업자(추심위탁시)·매입추심업자(채권양도시)를 선정할 경우 채무자 처우, 위법·민원이력 등을 평가에 반영
- ☑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무자에게 추심위탁·채권양도 전에 해당 예정일 등을 사전에 통지할 의무 (위탁: 5영업일 전, 양도: 10영업일 전)

	수탁추심업자(§39②)	매입추심업자(§33①)
공통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심인력의 규모·전문성 ▪ 민원내용·빈도, 민원처리 체계 ▪ 채권추심 관련 법 위반 내역 ▪ 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여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심인력의 규모·전문성 ▪ 민원내용·빈도, 민원처리 체계 ▪ 채권추심 관련 법 위반 내역 ▪ 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여부·내용
고유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채무조정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 양수대금 조달방법 ▪ 채무조정 내부기준 내용·현황 ▪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내용·현황 ▪ 채권양도 내부기준 내용·현황 ▪ 추심위탁 내부기준 내용·현황

4. 원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2/4)

▶ 연체채무자도 '고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3자를 통한 추심의 경우도 채무자 보호책임 지속 부담

추심업자 관리책임 (§33③, §39③)



원채권금융기관*은 수탁·매입추심업자가 「소비자신용법」 및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할 의무 (→ 손해배상책임)

* 개인채권을 최초로 양도한 채권금융기관

-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매입추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원채권금융기관이
추심업자의
위법행위 점검·보고

4. 원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3/4)

- ▶ 연체채무자도 '고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3자를 통한 추심의 경우도 채무자 보호책임 지속 부담

추심업자 업무제한 (§31④, §38)

- 개인연체채권을 양수한 채권금융기관이 동 채권을 제3자에게 재차 양도하기 위해서는 원채권금융기관의 동의 의무화
-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조정 업무를 수탁추심업자에게 위탁 금지

 - 다만,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별도의 의사결정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업무의 경우는 예외

* 채무자와 채무의 특징에 따라 감면율이 자동결정되는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감면율 산정·제시
- 채권금융기관이 수탁추심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추심 위·수탁 계약 취소 가능 (계약에 미리 해당내용 반영 의무)

4. 원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4/4)

▶ 연체채무자도 '고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3자를 통한 추심의 경우도 채무자 보호책임 지속 부담

추심시장 정비 (§5~§8, §18·§19)



'추심'이라는 동일 기능에도 불구하고, 수탁추심업자(허가제)에 비해 진입장벽이 현저히 낮은 매입추심업자(등록제)의 진입규제 강화

- 매입추심업을 대부업에서 분리(대부업 → 금전대부업 + 매입추심업), 양 업간 겸영* 금지

* 매입추심업 984개 = 대부업 겸영 622개(63%) + 추심 전업 362개(37%) ('19년말)

- 매입추심업자가 채권을 매입하려는 경우 담보조달비율*이 70% 이하 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 총 매입대금 중 매입하고자 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조달한 자금의 비율

- 대출금융기관은 담보조달비율을 초과한 대출 금지

5개 소비자신용관련업 상호간 겸영 가능 범위 (→승)

- ▶ 대부업 + 매입추심업 : (현행) 겸영 可 → (법 시행) 겸영 不可
- ▶ 대부업 + 대부중개업 : (현행) 겸영 可 → (법 시행) 겸영 可
- ▶ 채무조정교섭업(신설) : (현행) 자유업 → (법 시행) 다른 소비자신용관련업과 겸영 不可

Q. 담보조달비율 (§19②)

Q. 타 업권에 비해 매입추심업자의 영업행위 규제수준이 강함

A.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관점에서 판단 필요

- 여신금융기관은 직접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신용을 창출·공급하는 반면, 매입채권추심업자는 신용공여 없이 기존 채권을 저가매입 후 회수하여 성질상 투자업과 유사
- 타 금융업법에 따른 대부업권 대상 신용공여 한도 제한은 일부 업권(상호저축은행, 여전사)에 한하여 개별 여신금융기관별로 적용됨에 따라 담보조달비율 규제와 동일한 효과 달성에 한계

'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7월)

- ▶ 채권매입추심업자의 매입채권 잔액 4.7조원 (원금기준 40.5조원)
- ▶ 채권 매입율(=매입가/액면가) 15.2% ['19년말 기준]
- '대출 원리금 100'인 채권을 '매입가격 15'에 매입한 경우,
회계상 '자산 15'로 기록되나 실제로는 '100 + 매입 이후 추가 발생한 연체이자'까지 추심·회수 가능

Q. 담보조달비율 (§19②)

Q. [적용대상] 담보부 대출을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 여부

A. '매입추심업자가 채권을 매입하려는 경우' 모두 적용됨 (개인채권, 신용대출 여부 불문)

Q. [적용시점①] 대부업자가 법 시행 전 체결한 기존 매입채권 담보부 대출에 적용 여부

A. 법 시행 후 체결한 매입채권 담보부 대출에만 적용됨

Q. [적용시점②] 매입채권 담보부 대출 실행 후 만기연장 또는 대환시 적용 여부

A. 최초 매입채권 담보부 대출 실행시점에만 적용, 이후 만기연장 또는 대환시 적용 제외
 - 채권매입 후 주기적으로 채권가치를 계속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되, 규제회피 등 부작용 발생시 담보조달비율 수준 추가 축소 검토(→㉵)

5. 규율이행의 실효성 담보 (1/3)

▶ 채권금융기관 및 추심업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토록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강화 (§68)



원채권금융기관도
손해배상책임 부담

- ☑ 절차위반 행위에 대해 형벌보다는 행정제재를 주로 적용*
→ 제재 이력에 따라 추심업자에 대한 시장평판이 형성되도록 유도

* 예) 채무조정요청권 안내의무(\$44②) 위반: 과태료,
개인채권 매각 前 장래 이자채권 면제의무(\$31⑤) 위반: 기관 및 임직원 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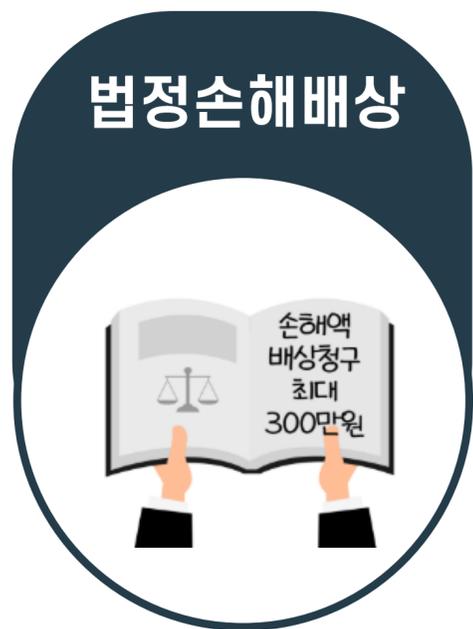
- ☑ 수탁추심업자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 매입추심업자가 「소비자신용법」 또는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 원채권금융기관도 해당 위반자와 함께 손해배상책임 부담

- 다만,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매입추심업자 관리책임 이행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

5. 규율이행의 실효성 담보 (2/3)

▶ 채권금융기관 및 추심업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토록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법정손해배상 도입 (§69)



300만원 이하
손해액 배상청구



채권금융기관, 소비자신용관련업자,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소비자신용법」을 위반한 경우 개인채무자는 손해배상(§68) 대신 300만원 이하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청구(§69) 가능

- 해당 채권금융기관, 소비자신용관련업자,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음

법정손해배상 (Statutory Damages)

▶ 무형의 재산권 침해 등 실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배상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법으로 배상액 규정

5. 규율이행의 실효성 담보 (3/3)

▶ 채권금융기관 및 추심업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토록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영업보증금 적립 (§70)



법적책임
이행 보장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 법적책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영업보증금 예치 의무 (영업보증금 규모 및 예치방법 등 → 승)

* 손해배상책임(§68), 법정손해배상책임(§69), 승으로 정하는 금융분쟁조정결과에 따른 책임

- 영업보증금은 해당금액 상당 보험금을 보장하는 증권으로서 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증권(Surety Bond)으로 대체 가능

(현재) 대부업·대부중개업 (대부업법, 1~5천만원)
매입추심업 (대부업법, 5천만원), 수탁추심업 (신용정보법, 5억원)



(개선) 채무조정교섭업에도 적용 + 영업규모별로 금액 차등화

Contents

I.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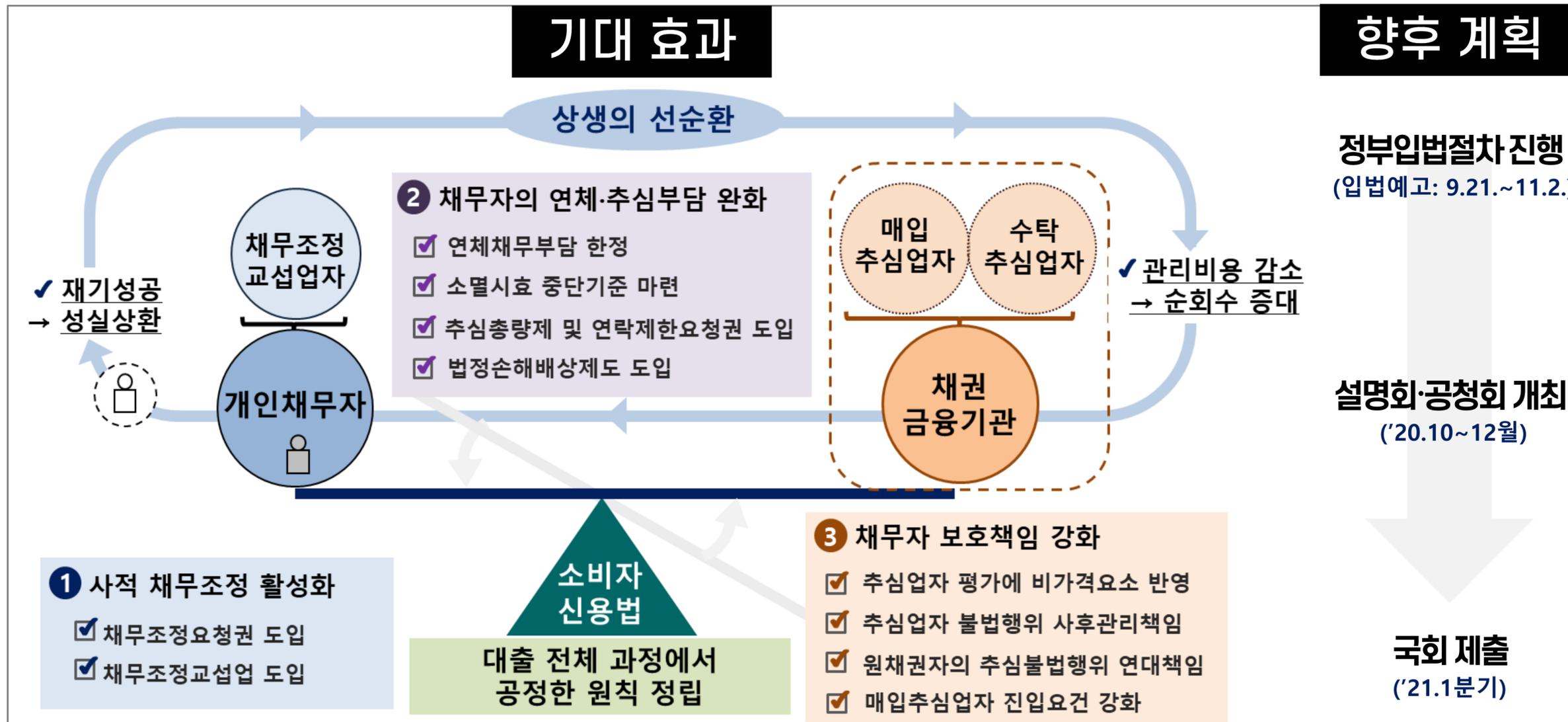
II. 추진 방안

III. 세부 내용

IV.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win-win)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 ▶ 개인채권 당사자간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 사회적 비용 절감
- ▶ 채권관리·회수체계에 고객보호가치 내재 → 채무자 재기·회수 증가
- ▶ '추심'이라는 동일기능에 동일규율 적용 → 건전한 추심질서 정립



감사합니다.
